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2818
- 발 의 자 : 박수빈 의원(찬성자 22명)
- 발 의 일 : 2025년 5월 26일
- 회 부 일 : 2025년 5월 29일

## 2. 제안이유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결권은 지방의회가 가지는 주요 권한 중의 하나임. 그러나, 현재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는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해 타당성과 완결성이 부족한 안건들이 반복적으로 의회에 상정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의회는 계획의 미비점을 인지하면서도 행정 공백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의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거나, 반려 시에는 행정 지연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의회의 감독·통제 권한을 형해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됨.
- 또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는 등 집행부의 관련 법규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
- 이에, 공유재산심의회에 시의원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보다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심의회에 시의원 참여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제1항제6호)
- 나.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 공개 시 개인식별정보 비공개 처리 규정 명확화(안 제4조제4항)
- 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의회 보고 의무 규정 신설(안 제11조 제5항)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 나. 예산조치 : 비대상(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 다. 입법예고 (2025. 6. 3. ~ 6. 7.)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 의견

### 가.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배경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을 공유재산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제1항)하고,
  -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이행 상황에 대한 시의회 보고 의무를 신설(안 제11조제5항)하며, 기타 조문의 이동 등을 통해 내용별로 재구조화하려는 것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②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하는 경우
  -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폐지)하려는 경우
  - 무상으로 회계간의 재산을 이관하는 경우
  -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 5억원 초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가격사정,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재심의 대상, 영구시설물 축조,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나. 개정 주요 내용별 세부내용 검토

#### 1)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으로 시의원 위촉(안 제4조제1항제6호)

- 안 제4조제1항제6호는 시의원을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은 최근 10년간 약 73%가 사용료·대부료 감면, 용도변경(폐지)과 가격사정 등 공유재산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이 중 20억원 이상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결을 받아 확정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현황\* >**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소계	취득	처분	교환	관리*	가격사정	소계	취득	처분
2,187	416	114	52	1,066	539	380	299	81

- 공유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안 의결은 시의회의 주요 권한 중 하나로, 이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의 사전 심의 단계에서 타당성과 완결성이 부족한 사업을 거르지 못한 채 시의회 의결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음.
  - 의회가 해당 사업을 삭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의 지연이나 공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마지못해 이를 의결하게 되는 등 의회의 감독·통제권이 형해화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심의회에 시의원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보다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볼 때, 본 개정안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신·구조문대비표(발체) >**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0조의3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민	① 법 제16조 및 영 제10조의3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① 법 제16조 및 영 제10조의3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① 법 제16조 및 영 제10조의3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① 법 제16조 및 영 제10조의3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간위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삭제

<신설>

<신설>

② (이하 생략).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5. 본청 및 사업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6.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속 의원

② (이하 생략)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13명) 구성 현황〉

- 내부위원(5명) : 위원장(부시장), 부위원장(재무국장)  
경제일자리기획관,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본부장
- 외부위원(8명) : 부위원장 1명 포함

구 성	학계(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인 원	4명	1명	2명	1명

- ※ **심의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 외에도 사용료·대부료 감면, 용도폐지·용도변경, 회계간 무상이관, 영구시설물 축조 등을 심의하고 있음.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제3항)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현행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부시장) 등 내부 위원(공무원 5명)과 부위원장 등 외부위원(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하여 총 13명으로 운영되고 있음.

- ※ 단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에서는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심의회는 서울시 전체 공유재산을 심의하고 있음.
- ※ 상임위원회에 소속을 두고 있는 의원이라면 심의·의결에 제약이 있을 소지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 1. 20., 2021. 4. 20.>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이하 생략)

## 〈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자격·요건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 관련 본 조례 규정 〉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0조의3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1.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재직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4. 삭제 <2016.1.7.>

- 재무국은 본 개정안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시의원 참여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전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심의회 자문단계에서 사전 심의를 받은 사업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제출하여 시의회 의결로 확정하는 상황이 되어,

- 공유재산심의회 자문의 독립성 침해 및 동일 사업에 대한 중복심의 문제가 우려되어 시의회 의결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의원발의 조례안 의견제출” (재산관리과-6447, 2025.5.29.)

※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은 최근 10년간 약 73%가 사용료대부료 감면, 용도변경(폐지)과 가격 사정 등 공유재산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이중 20억원 이상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결을 받아 확정하고 있음.

○ 한편, 시의원을 심의회 위원 자격요건으로 규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법제담당관이 받은 3건의 법률자문 내용을 살펴보면 3건 모두 심의회 위원 자격으로 시의원을 둘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 법률자문 의견(서울특별시의회 법제담당관) 요약 〉

<의견 1>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고유권한이라 보기 어려운 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공유재산법 및 그 시행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당해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례로써 시의원이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의견 2> 의회와 집행부의 대립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지방행정 구조하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위임규정이 없는 한 집행기관의 권한을 제약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주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음(대법원 2000추36).

- i) 집행기관의 권한이 법령에 의해 전속적으로 부여된 경우
- ii)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인사권,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에 사전적·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 iii)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해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 iv)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개입하는 경우(예: 지방의회 의장의 위원 추천 등)



- 본 조례안에 따른 시의원의 공유재산심의회 참여는 위에서 살펴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법제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의견 3> 본 건의 경우 단순히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위 개정안만으로는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2)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의회 보고 의무 규정 신설(안 제 11조제5항)

- 안 제11조제5항은 시의회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의 이행 상황을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제5항 신설>

- ⑤ 재산관리총괄관은 시의회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사업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최근 10년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사업(382)건 중 사업이 완료된 사업은 221건(66.8%)이고,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지연·보류 중인 사업은 110건(33.2%)으로 나타나고 있음(2025.3월 기준).

### 〈최근 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 추진 현황〉

※ 동일사업(변경 등) 중복계산

구분	합계	의회 삭제	관리계획 의결(가결) 후 사업 추진현황		
			소계	완료 사업	미완료 사업
안건	382	51	331	221	110

-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미완료된 사업으로써 지연되거나 보류·중지 또는 사실상 취소된 사업 등,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정기

적으로 점검하여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시의회 의결권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미완료 사업 추진현황

※ 동일사업(변경 등) 중복계산

구분	합계	정상 추진			사업 지연·보류			
		소계	정상 추진중	변경계획 재상정 검토중	소계	대체 방안 검토중	사업 지연중	사업 취소 검토중
안건	110	95	87	8	15	4	3	8

○ 사업취소 검토 중(8건)

재상정(사업취소) 검토 사유	사업명	2025 재상정 시기	
		심의회	관리계획
사업비 과다 상승	난곡사거리 행복주택 및 복합체육시설 건립	완료 (23년 6차)	(미정)
	물산업 미니클러스터 조성	완료 (25년 1차)	완료 (4월 임시회)
	증산 공공주택 복합시설 건립 사업	제3차 (7/24)	8월 임시회
예산 미반영	화곡119안전센터 이전 건립	제5차 (12/4)	(미정)
	한강 통합선착장(여의나루) 조성사업		
사업반대 의견	강일 차고지·공공주택 복합화	완료 (23년 6차)	(미정)
기타	서울혁신파크 내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제3차 (7/24)	8월 임시회
	한강 아트피어 조성	26년	26년

### 3) 기타 조문 명확화, 자구 정비 등

- 본 개정조례안의 조문 및 자구 정비는 조문의 이동을 통해 내용별로 조문을 재구조화하고, 법 규정 사항의 확인적 규정 등 모호한 조문의 개선을 통해 조례의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한편, 안 제11조제4항의 개정 사항의 일부(“아니한 경우” → “않는 한”)는 법제처에서 지양하는 표현인 “일본어 투” 표현에 해당하는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 기타 조문 개정안 전·후 비교표 〉

현행	개정안	개정내용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0조의3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 및 영 제10조의3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위원 자격요건(민간인/공무원) 통합 규정 · 인용 법조문 추가, 자구 수정(명확화), 띄어쓰기  · 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제4항의 ‘민간위원 과반수’ 요건 확인 규정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삭제		
<신설>	5. 본청 및 사업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현행 제4조제2항에서 이동 규정
<신설>	6.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속 의원	<별도 검토보고 건>

<p>②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은 본청 및 사업소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p>		<p>· 개정안 제4조제1항 제5호에 신설 규정</p>
<p>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 및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 자구 수정</p>
<p>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③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 자구 수정</p>
<p>⑤ 심의회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 작성·보관하여야 ----- ----- ----- - 다만, 공개에 의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인식할 수 없도록 비공개처리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p>	<p>· 자구 수정  · 개인식별정보 비공개 → 비공개 처리 후 공개</p>
<p>⑥·⑦ (생략)</p>	<p>⑤·⑥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p>	
<p>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시장은 투자심사 및 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이후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p>	<p>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 시의회 ----- -----</p>	<p>· 현행 본 조례 제11조 제1항에서 기 정의한</p>

<p>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 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 ----- ----- . ----- ----- ----- .</p>	<p>약칭 반영</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받아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p>	<p>③ ----- -----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 소관의 공유재산 ----- ----- ----- .</p>	<p>· 자구 수정(명확화)</p>
<p>④ 시의회에서 안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 시, 그 삭제된 건은 내용에 변경이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다.</p>	<p>④ ----- ----- 의결한 경우, 해당 삭제 ----- - 않는 한 ----- ----- 재상정할 ----- .</p>	<p>· 자구 수정  · 띄어쓰기</p>
<p>&lt;신 설&gt;</p>	<p>⑤ 재산관리총괄관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사업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lt;별도 검토보고 건&gt;</p>

#### 다. 부칙

- 안 부칙 제1조(시행일)는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면서 회의록 등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시행규칙 개정 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 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부칙 제2조(적용례)는 신설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사업별 이행상황 보고 대상 적용 시기를 2015년 이후 의결된 사업으로 한정하면서, 이미 완료된 사업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고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 안 부칙 제3조(적용례)는 현행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신설된 시의회 소속 의원은 다음 위원을 재구성할 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부칙 제4조(시행규칙 개정)는 조례로 시행규칙의 6개월 이내 개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에 대한 법률적 분쟁의 소지는 있다고 보임.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시의회 보고 의무는 2015년 이후 의결된 모든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의결되어 시행 당시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공유재산심의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다만,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심의회 의원의 참여는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심의회를 새로 구성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행규칙 개정) 서울특별시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4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전문위원	정찬일	입법조사관	최석훈
------	-----	-------	-----